

과천시공사 정관

제정 2019.12.19. 정관 제1호

개정 2020.11.16. 정관 제45호

개정 2020.12.10. 정관 제46호

개정 2021.06.24. 정관 제5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과천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과천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과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공사의 명칭은 과천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Gwacheon Urban Corporation(약호 GCUC)이라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중앙동)에 두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50억원으로 하며,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사가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gcuc.or.kr)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과천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제6조(규정의 제정) ①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사 업

제7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7. 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 포함)
8.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 운영한다.

1. 과천시 시민회관의 관리 운영
2. 청소년 시설관리
3. 도시공원 관리
4. 마주사업 관리
5.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④ 공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일부를 이사회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출자할 수 있다.

제8조(대행사업비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서) 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사업의 집행)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요금, 사용료, 분양가격 등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2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8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사장과 이사 1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비상임이사 중 2명은 시의 기획감사담당관 및 도시개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비상임이사는 세무·회계·법률·경영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한다.

③ 감사는 시의 감사업무담당 이외의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감사 또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 사장은 임원의 채용 및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면사항을 시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⑥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상임이사(본부장)는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6조(하부조직) 공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구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17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에 따라 서류전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직원의 채용 및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면사항을 매월 시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른다.

② 직원의 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따른다.

③ 공사의 임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9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0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1조(임·직원의 보수) ①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보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받는다.

② 비상임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기소관 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비상임 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22조(비밀누설의 금지등) 공사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4조(대리인의 임명) 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5조(고문) ① 사장은 이사회 의결로 고문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의 활동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신분보장) 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 설치 및 구성)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8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한 의안
7.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8. 증자, 감자에 관한 사항
9. 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10. 자금의 장·단기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11.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2.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
13. 재산 재평가액의 확정
14. 그 밖에 공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의결권의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30조(의장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1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 변경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재심요청) 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서면결의)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며 의결할 수 있다.

제34조(의사록 작성)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② 과천시의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운영규정 등) 상기 이외의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재 무 회 계

제36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7조(예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이 확정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와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41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제42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국가나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국가나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4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

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사채 등 발행

제46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모집 및 인수방법

③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발행 년월일
4.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④ 공사는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신설 2020.11.16.)

제47조(차관)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제48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9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51조(공무원 파견요구 등) ① 사장은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과천시 공인조례」에 따른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53조(해산) ① 공사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부채와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제54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준용) 이 정관이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정 2019.12.19. 정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원은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공단 직원은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 공사는 공단의 재산을 승계하며,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

제4조(최초의 사업연도) 공사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사의 설립 일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공단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공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0.11.16. 정관 제45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0.12.10. 정관 제46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0.12.10. 정관 제46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1.06.24. 정관 제5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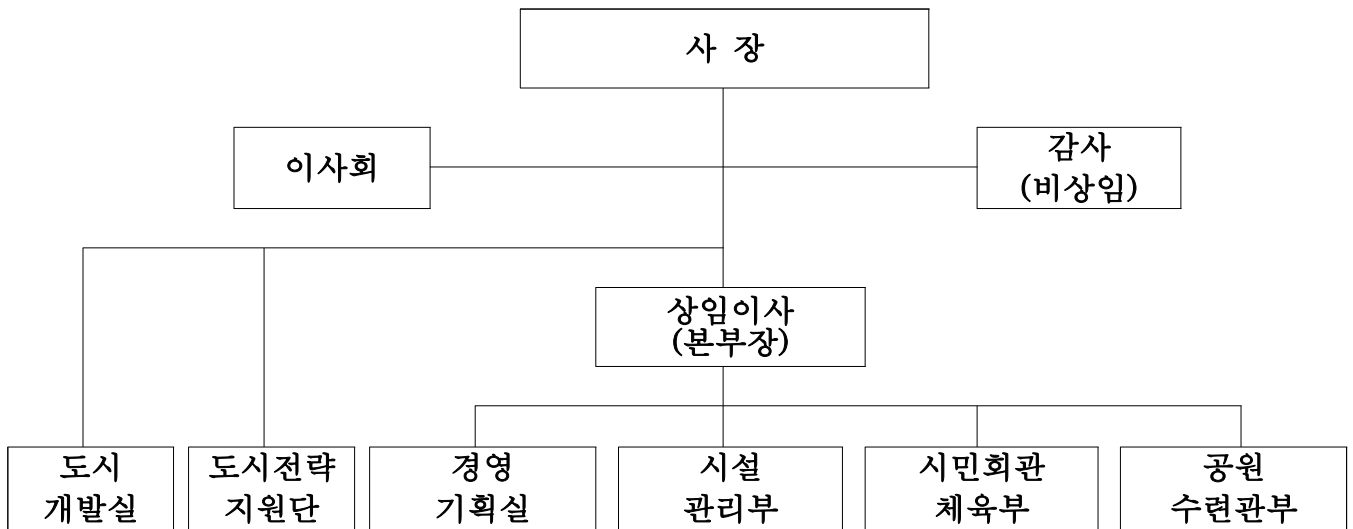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정 2020.12.10.,2021.06.24.)

과천시도시공사 기구 및 정원표 (제16조 관련)

○ 기구표



○ 정원표

직위·급		정원	비고
합계		129	
임원	사장	1	
	상임이사	1	
일반직	소계	127	
	3급	6	
	4급	19	
	5급	38	
	6급	30	
	7급	34	